

‘변명 일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안 “기업에 면죄부 주나”

✎ 조연주 기자 | © 승인 2021.07.15 17:09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본부 긴급토론회 개최
처벌법 핵심 의제인 ‘2인1조 작업’, ‘과로사’ 내용 없어
뇌심혈관질환 재해 대상되면 고용 줄어든다? ‘궁색한 변명’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가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5일 오전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 송승현 기자

제정부터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았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령 입법을 앞두고도 법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끊임없는 산재사망과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해 사고 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보다 사실상 원청에게 면죄부를 주려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가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5일 오전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난 12일 입법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안에 2인1조 작업지침 등 핵심대책을 제외한 것을 두고 원청 등 경영책임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끊이지 않는 노동자들의 죽음과 질병을 근절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것으로, 사고 책임의 주체를 하청과 원청 등으로 확대하고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시민들이 법 제정을 요구하며 가장 일선에 내세웠던 것은 바로 '2인 1조 작업' 지침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시행령 안에는 이들의 핵심요구가 담겨있지 않았고, 노동부 관계자 또한 시행령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2인 1조 지침 내용은 생략됐다"고 말해 분노를 사기도 했다.

중대재해예방 언급없는 중대재해예방법 '지적'
'적절한', '충분한' 말고 구체적인 기준 세워야

구분	중대산업재해 정부안
경영책임자의 의무 4조1항	①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② 위험요소 확인 및 점검, 개선의 업무처리 절차마련 및 이행상황 점검 (위험성평가로 같음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할 것.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법 규정보다 상회하여 배치하고, 겸직의 경우에는 업무시간을 보장 ④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 위한 적정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체계 마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⑤ 500명이상 기업, 200위 건설회사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⑥ 종사자 의견을 받기 1회 이상 청취, 개선방안 마련. 이 행조치. 산보위, 안전보건협의체, 건설업 안전보건협의체 논의 및 심의의결이 있으면 같음할 수 있음 ⑦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의 대응절차 마련. 받기 1회 이상 확인, 점검 ⑧ 도급, 용역, 위탁시 각 사항 확인 평가기준절차마련 이행상황 확인점검

시행령에 재해 예방과 관련한 언급이 없다는 지적이 가장 먼저 나왔다.

토론회 기초 발제자로 나선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 시행령안에 2인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 확보 등 중대재해의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법 적용 여부가 모호하며, 직업성 질병에 대해서도 뇌심혈관질환 등은 제외됐고, 급성중독성 질병 24개 리스트가 제시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실장은 시행령 입법예고안 4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4항을 지목하고, '재해 예방'이 아닌 '안전 보건'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재해 예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좁혔으며 '적정한 예산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다고 비판했다. 4항에는 경영책임자가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나와 있다.

정부는 시행령안이 내세운 안전보건관련법령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 실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과로사나 일터 괴롭힘 등에 대한 처벌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사업장 점검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아닌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지점을 두고 경영책임자가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허점도 짚었다.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국장 “시행령안의 ‘예산과 인력의 적정한이라는 표현 충분한이라는 표현이 기준이 없다. 사고 발생 시 ‘적정한’과 ‘충분한’의 기준을 판단하는 주체도 나와있지 않다. 적정함을 판단하는 주체는 법원인지, 사업주인지 또는 하청 노동자인지 모호하다”며 “노동부는 명확한 기준을 다 담다보면 시행령 시행규칙이 무거워질 것이라고 하지만, 중대재해의 기준은 꼼꼼하고 다양한 기준으로 담기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뇌심혈관 질환 재해 대상되면 고용 줄어든다? ‘궁색한 변명’
중대시민재해 장소 인정 기준 ‘한정적’ 지적... 범위 넓혀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직업성 질병 시행령의 문제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직업성 질병의 범위* 2021 산업안전보건 연구보고서 연구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이진우



진우 이

1. 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정부 설명자료에 대한 반박

<p>Q3 시행령에서 규정한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뇌심혈관계,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병 등이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p> <p><input type="checkbox"/> 별 위반시 처벌이 따르는 만큼 중대 산업재해인지가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함</p> <p><input type="checkbox"/> 사고성 재해처럼 특정 질병 유발 요인이 업무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여야 하는 등 인과관계가 명확할 필요</p> <p style="font-size: x-small;">* 중대산업재해 중 하나인 직업성 질병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급성중독을 예시'로 든 것도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이 질병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로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법 제39조에서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의 범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함. ○ 사망이 아닌 보건조치위반 사례로 질병 발생은 제168조가 규정함. 단순히 보건조치 위반만으로도 벌금형 정도의 처벌이 가능함. ○ 산업법은 직업병 발생의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보건조치위반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되 신고 형량에 제약을 두어 단순 위반과 직업병발생 위반을 법원이 달리 처벌할 수 있게 함. ○ 이론적으로는 산업법이 보건조치위반에 따른 직업병 발생을 처벌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또한 처벌되는 직업병의 유형이나 구체적인 종류를 특정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적용상 유연성이 있음. <p>→ 기존의 산업법에서도 질병 발생시 39조 위반에 따른 처벌은 가능했으나, 실무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음.</p> <p>→ 그간 노동부 업무태도로 처벌하지 않은 것을 질병도 사고처럼 명확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이를 ‘급성’ 중독만 목록화하는 근거로 사용</p>
---	---

토론회 갈무리

노동부는 직업성 질병 기준에서 뇌심혈관계와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병 등을 제외하면서 “사고성 재해처럼 특정 질병 유발 요인이 업무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여야 하는 등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한다”고 근거를 대며 “뇌심혈관질환이 질병목록에 포함될 경우 기저질환자에 대한 채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를인 이진우 의사는 “노동부의 설명은 업무상 질병인지를 판정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대한 모욕이며, 산재인정구조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고 분노하며 “애초에 질병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노동부의 업무다”라며 “과로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처벌대상이 될 사업장이 채용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것은 변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재사망과 중증재해를 줄이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면, 이 법에서 다루는 대상재해는 중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같이 재해 대상(질병항목)이 너무 협소하게 정해지면, 책임을 명확히 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사는 또한 노동부가 질병도 사고처럼 명확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한다며 ‘급성’ 중독으로 질병을 축소시킨 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오민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변호사는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시행령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며 “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별도로 규정하고 공중이용시설 또는 제조물 관한 규정과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어 시설물이나 제조물에 포함되지 않는 재해의 경우 법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행령안은 준공이 10년 넘은 도로, 교량 등 여섯 종류의 시설로만 한정하고 있어 해당 장소 밖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시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해발생 시 생명과 신체의 피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가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5일 오전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 송승현 기자

신생 화학물질은 매년 200개 ... “원료 등 포괄적 해석해야”

관계법령에 근기법 추가해야 사업자 처벌 근거 명확해져

시행령안 3장 '시민중대재해' 10조 3항에 따르면, 시민중대재해의 적용은 시행령안 별표5에 표기된 12개 관계법령에 명시된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있을 시에만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화학물질 감시단체 '건강지사'의 현재순 기획국장은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4만3000종이며, 이중 유독물질은 772종이고, 배출량 조사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415종이다. 그러나 시행령안에서는 오직 12개 법령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물질로 사고원인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12개 법령에 포함된 화학물질만 아니면 안전하다고 보는 것인가. 매년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규물질만 200여개다. 원료 또는 제조물은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게 남겨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경호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위원장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는 주 평균 71.3시간이라는 초장시간 노동이 원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특수고용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장시간 노동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한 뒤 “과로사는 엄연한 산재이자 중대재해다. 중대재해 발생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대로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시행령의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장시간 노동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처벌근거가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사망한 김용균 씨의 죽음을 두고 “2인 1조가 지침이 현장에 적용됐더라면 위험에 처해있는 아들을 구했을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은 결국 혼자 위험에 처해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계속 죽이겠다는 것인가. 혼자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게 다반사인데 정부는 도대체 이 죽음들을 어찌 막으려는 것인지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

라”고 비판했다.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